[회의록]제186차 이사회 회의록 - 강원의료사협67차

1. 회의일시: 2023년 4월 13일(목) 오후 16시

2. 회의장소: 밝음신협 2층 회의실

3. 회의참석: 이광희, 박준영, 최효심, 김선기, 천혜란, 서연남, 김은주, 차윤정,

김유미, 강숙임, 안승혜, 양종천, 도수연, 장태선, 이창호

(이상 이사, 총 15명) 배석 : 신승훈 전무

4. 성원보고

- 이광희 이사장(이하 의장)이 성원 18명 중 1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하고 제186차 정기 이사회의 개회를 16시에 선언하다.

5. 전차회의록

- 신승훈 전무가 3월 16일(목) 제185차 이사회 전차회의록를 낭독하고 의견을 물은바다른 의견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승인하다.

6. 보고안건

- 의장이 의안을 순서대로 상정하고 별첨되어 있는 자료를 확인한 후 신승훈 전무에 게 안건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다.
- 신승훈 전무가 논의안건 및 보고안건을 보고하다.
- 차기 이사회는 6월 23일(금) 오후 12시에 개최하기로 하다.

7. 논의안건

□제1호 의안 : 2023년 3월 신규 조합원 및 가족 조합 이용 승인 건

1. 제안 배경

- 협동조합기본법 및 정관에 따른 신규 조합원 및 그 가족이 조합 보건-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조합 공급고 산정의 100분의 50범위를 유지함.

2. 제의관계조항
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제58조(사업의 이용)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.
- ②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- 1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
- 2.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
- 3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
- 4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- 5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
- 6.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
- 7.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·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·거소·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
- 8.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
- 9.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- ③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한다. 이 경우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.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.

3. 제안 내용

- 3월 신규 조합원(9명, 9명(가구원)): 강숙임(이승환, 이준원, 이지원), 이순이(송정연, 이민정, 이상홍), 염명화(염일남), 장재화, 노정희, 엄영옥, 장성면, 나미자(김도연), 김 덕연(김준호)

총 9명(세대) *총조합원수 1,567명(23년 3월 31일 기준)

- 이상의 조합원과 그 가족에 대한 조합 의료기관 이용을 승인 주문함.
- -> 결정 사항 : 원안대로 승인하다.
- 추가 의견 -

□제2호 의안 : 출자금, 조합비, 사업이용 규정 제정의 건

1. 제안 배경

- 강원의료사협으로 이관되는 강원, 춘천, 충주 아이쿱 조합원 및 해당 지역의 신규 조합원 가입자들의 조합비 납부를 위한 근거 필요
- iN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제공하는 공동이용시설 서비스 및 복지 서비스 를 조합원가로 이용하고, 조합 차원에서 확대해 나갈 건강증진 활동 서비스 및 자연드림 매장의 조합원가 이용을 위해서 기존 강원의료사협 조합원들도 단계적으로 조합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근거를 마련코자 함.
- 월 1만원 조합비 지불은 조합과 연합회가 그 이상의 혜택으로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공동의 의무 사항으로서, 중기적으로는 조합의 전 조합원이 조합비 조합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혜택과 의미를 적극 알려나가 모든 조합원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함.

2. 제의관계조항
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- 3. 규정,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

3. 제안내용

- 강원의료사협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 건강증진활동 지원, iN라이프케어이종연합회를 통한 공동유대시설 및 복지 서비스 이용, 자연드림 매장 및 괴산/구례 자연드림파 크 사업 이용시 조합원가 혜택 제공 등을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합원 모두가 조합비 납부를 의무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검토와 승인을 요청함.

- -> 결정 사항 : 제 4조 [조합비 관련 사항] ②항을 추가
- ① 정관 제21조 제1항에 따른 경비는 조합원이 가입승인 후 익월부터 매월 부과하는 조합비를 의미한다.
- ② 조합비는 월 1만원으로 한다.

기존 ②항 부터 ③ ~ ⑥항으로 변경 , 나머지 규정은 원안대로 승인하다.

- 추가 의견 -
- 규정 내 문구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하기로 하다.

□제3호 의안 : 강원의료사협 상조회 출범의 건

1. 제안 배경

- 암과 만성질환 없는 건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 활동의 실천과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는 따뜻한 유대와 공동체 실천이 중요.
- 이러한 라이프케어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상조회를 결성하여 예방중심의 건강생활 실천을 선도하고, 암과 같은 질병으로 곤경을 겪게 되면 상호 부조하는 공동체적 유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함.
- 이를 위해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상조회를 이끌어갈 초대 임원을 추천받고자 함.

2. 제의관계조항
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-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3. 제안내용

- 라이프케어운동을 통한 암과 만성질환 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, 우리 조합의 라이프케어 참여자를 중심으로 이를 지원하는 '강원의료사협 상조회'를 구성하고자 의결 주문하오니 검토 및 승인을 요청함.
- (승인시)추진일정 및 추진사항
 - · 4월 00일 강원의료사협 000 상조회 창립총회

< 안 건>

- · 상조회 회칙 제정
- · 상조회 초대 임원 선출(회장 1인, 이사 5인 ~ 11인 이하(회장 포함), 감사 2인)
- · 2023년 상조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
- 기타

-> 결정 사항 : 원안대로 승인하다.

- 추가 의견 -
- 준비위원회(이광희, 김유미, 안승혜, 장태선) 구성 추진

□제4호 의안 : 씨앗재단 후원금 요청의 건

1. 제안 배경

- 자연드림 씨앗재단이 iN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 의료사협 상조회의 적 극적인 조합원 건강증진활동과 지역사회 내 라이프케어 활동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함.
- 이에 본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 2,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함.
-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강원의료사협 조합원들의 건강증진 및 라이프케어 운동의 참여도를 높여낼 수 있을 것이며, 지역사회에 강원의료사협의 인지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2. 제의관계조항
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-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3. 제안내용

- 자연드림 씨앗재단이 지원하는 의료사협의 건강증진 및 라이프케어 상호부조 활성 화 사업에 2,000만원 수준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오니, 이에 대한 검토와 승인을 요청함.

-> 결정 사항 : 원안대로 승인하다.

- 추가 의견 -
- 일부 예산은 "건강점빵" 활동에 활용키로 함.

□제5호 의안 : 지역위원회 조합원 활동 운영의 건

1. 제안 배경

- 조합비 조합 분담금은 경제사업이 아니라 조합원 활동 지원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함.
- 이에 관련 분담금을 별도 관리하는 통장과 계정과목을 개설하고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도록 조치하고자 함.
- 강원, 춘천, 충주 아이쿱 조합원이 강원의료사협으로 이관하면 곧바로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조합원 활동을 추진하여 조합원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준비하고자 함.

2. 제의관계조항
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-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3. 제안내용

- 각 통합 지역별로 활발한 조합원 활동을 위하여 조합원 활동 지원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유영하고자, 관련 통장과 계정 과목을 개설하고자 함.
- 또한 각 지역 아이쿱 조합원들이 강원의료사협으로 이관된 후에도 활발한 조합원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각 지역별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예산을 지역위원회 별로 배분하여 조합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.
- 이에 관련 내용을 첨부자료와 같이 제안하오니 검토 및 승인을 요청함.

-> 결정 사항 : 원안대로 승인하다.

- 추가 의견 -
- 김선기 이사 : 관계들을 잘 짜야할 것 같다, 조직활동, 회계 등 의료사협 사무국의 역량들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.

□제6호 의안 : 임직원 정책교육 계획의 건

- 1. 제안 배경
- 원활한 조직융합을 위한 강원의료사협-아이쿱생협 정책을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코 자 함.
- 조직 및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 운영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함.
- 대상은 강원의료사협 임직원으로 함.

2. 제의관계조항
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-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3. 제안내용

- 임직원 정책교육 계획 검토 및 승인을 요청 함.

- 교육계획(안)

· 교육방식 : 강의, 토론, 현장 견학 등(가급적 줌이 아닌 오프라인 대면을 제안 함.)

· 커리큘럼 : 4월부터 총 5회, 1회차(2시간)

차수	주제	강사	일시(안)
1	강원의료사협 20년 역사	박준영 강원의료사협 부이사장	4/19(수) 11시
2	"사람을 위한 치유, 지구를 위한 힐링" 아이쿱생협 26년 역사 & 괴산자연드림파크 견학	김아영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	5/3(수) 11시
3	라이프케어운동의 도전과 의미	박범용 자연드림치유연구재단 힐러 매니저	5/17(수) 11시
4	조직융합을 통한 강원의료사협의 미래와 과제	최혁진 iN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	5/31(수) 11시
5	라이프케어 의료사협의 현재 - 조직 및 사업 정책 & 홍성힐링센터 견학	유나미 라이프케어 충청의료사협 이사장	6/7(수) 11시

-> 결정 사항 : 1일 교육으로 하되, 1박 2일로 구성하여 교육 추진키로 함. 5월 9일(화) ~ 10일(수)

- 추가 의견 -
- 이사님들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키로 함.

□제7호 의안 : 아이쿰생협연합회-강원의료사협 업무협약서 체결의 건

1. 제안 배경

- 강원의료사협은 iN라이프케어이종연합회 회원으로 연합회와 상호협력 및 공동사업을 할 수 있지만 아이쿱생협연합회와의 상호협력을 위해서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협력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.
- 제2호 의안과 연동, 조합비 규정 제정 및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우리 조합의 조합 비 조합원이 아이쿱생협연합회(이하 연합회)의 자연드림 사업을 조합원가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합도 연합회의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상호이용 가능해짐.

2. 제의관계조항
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-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3. 제안내용

- 아이쿱생협연합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강화하고 라이프 케어활동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며, 연합회의 기존 전산, 장비 등 기반시설과 인 적·물적 자원 등 서비스를 상호협력 하고자하니. 이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요청함.

-> 결정 사항 : 원안대로 승인하다.

서 명

의장 이광희

이사 박준영

이사 최효심

이사 김선기

이사 천혜란

이사 서연남

이사 김은주

이사 차윤정

이사 김유미

이사 강숙임

이사 안승혜

이사 양종천

이사 도수연

이사 장태선

이사 이창호